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2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 안상훈 · 서일준 · 김기현

고동진 • 백종헌 • 김대식

이인선 · 최보윤 · 박성훈
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주요내용

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 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.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4조, 제20조의2 및 제4 3조).

법률 제 호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구성 및 운영"을 "구성, 운영 및 지정 해제"로 한다.

-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- 1.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0조의2(교육명령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, 교육기관,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(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 | 제14조(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 |
| 치 및 운영 등) ① ~ ⑥ (생 | 치 및 운영 등) ① ~ ⑥ (현행 |
| 략) | 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 |
| |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|
| |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|
| | 해제할 수 있다. |
| | 1.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|
| |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|
| | 경우 |
| | 2.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 |
| |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|
| | <u> 못한 경우</u> |
| |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|
| |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|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 | <u>®</u> |
| 윤리위원회의 <u>구성 및 운영</u> 등 | <u>구성, 운영 및 지</u> |
|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| <u>정 해제</u> |
| 으로 정한다. | |
| <u> <신 설></u> | 제20조의2(교육명령) ① 보건복지 |
| | 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|
| |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 |
| | 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|
| |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 |

제43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2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, 교육기관,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------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